

Fn insurance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Septemb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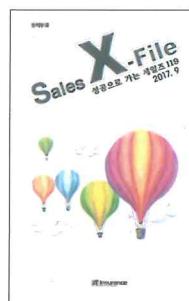
Vol. 282



저해지종신보험, '新법인플랜'부상 "CEO·임원 증세 방어"
‘당뇨위험’ 1000만 時代… 당뇨보험시장 “거대화 조짐”
‘문재인 케어’ 發보장성 전격확대… 실손보험 위상 “이상無”
홈수랑스 14년… 생보 ‘인기’ vs 손보 ‘사들’
잇단 ‘단톡방 성희롱’ 파문…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재조명
손보 ‘생활비 癌보험’ 新버전 본격경쟁… 한화손보 “화력 집중”

SPECIAL INTERVIEW

한국외대 로스쿨 김은경 교수
서울 금천우체국 이덕순 FC



주차장 하수구 관리 임대인의 '직무수행'일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다73482(본소),

2010다73499(반소) 판결

【판결요지】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지상 주차장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것이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이것이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보험회사)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균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했다.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본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다

가구주택인 2층 및 3층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또한 1층은 소매점으로 제3자에게 각 임대, 지하 1층은 소외 회사에게 의료기 제조공장으로 임대했다.

- 그런데 보험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의 지상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관이 머리카락이나 낙엽 등의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주차장 도랑으로부터 하수가 역류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으로 하수가 유입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소

외 회사 소유의 사무기구와 의료기 제품이 침수됐다.

- 한편,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이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돼 있다. 피고의 직업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다.

【원심판결】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가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그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일상 생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의 직무수행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에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 지하 1층이 침수된 것은 피고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면책의 범위를
넓힌 대상판결의 입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기인한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비해 ‘보험사고 발생 위험성’이나 ‘배상책임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한편,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피보험자의 직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를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주된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에 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돼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건물 지하 1층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월 관

리비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지하 1층의 임차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피보험자)가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그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 임대차목적물인 지하 1층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피고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위 침수사고는 피고인이 해당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발생원인이다. 결국 이 침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피고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

[판례평석]

1.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은 물론 대물배상까지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다.

구체적으로 위 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①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②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대인사고)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2.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지상 주차장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것이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보험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관해 원심판결은 "그러한 행위는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임대인)의 직무수행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 차이는 '피보험자의 직무'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문제는 대상판결과 같이 '피보험자의 직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존재이유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대상판결은 '피보험자의 직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를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주된 직업상의 사무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부수적인 직무에 까지 직무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피보험자의 직무'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특히 주택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의 유지·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부담하고 있어 직무 해당성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는 것인데,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부수적인 직무에라도 해당하면 모두 면책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다.

더군다나 위 면책사유 외에도 15개의 면책규정이 추가로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면책사유의 확대해석은 위 보험의 존재이유를 몰각시킬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해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나 배상책임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책사유로 해야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수준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4. 무릇 보험약관은 보험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한 점에서 약관규정의 해석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점에서도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면책의 범위를 넓힌 대상판결의 입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InS**

글_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편)으로 근무